

#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59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2.

발의자 : 박영순 · 박정 · 이장섭  
윤영덕 · 안민석 · 김교홍  
최인호 · 조승래 · 임호선  
조정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5항 및 제16조제4항 · 제5항 신설).



##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제1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이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~ ④ (생 략)	제8조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<u>&lt;신 설&gt;</u>  <u>⑤</u> (생 략)
제16조(전담기관 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	제16조(전담기관 지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&lt;신 설&gt;</u>  <u>④</u>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<u>&lt;신 설&gt;</u>	<u>⑤</u>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

<p><u>④ (생략)</u></p>	<p><u>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 <u>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